

호남지방통계청 공무원근로자(통계조사관) 채용 공고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공무원근로자(통계조사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 1. 2.
호남지방통계청장

1. 채용인원

구분	부서	인원	채용일	계약방법	근로조건	임금*
공무원근로자 (통계조사관)	남원 사무소	1명	2025.1.31. (금)	근로계약 (만 60세 정년)	1주 40시간, 주5일 근무	기본급: 1,911,650원(호봉제), 급식비 140천원, 표본관리비 200천원 명절휴가비(연 2회/각550천원)

※ 공무원 근로자의 처우는 『통계청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통계청 취업규칙』, 『통계청 임금협약서』 등을 따름

※ 근무장소: 채용부서

부서	주소
남원사무소	전북 남원시 요천로 1393

○ 수습기간: 2025. 1. 31. ~ 2025. 4. 30. (3개월)

-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 심사 후 정규 임용(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2. 담당업무

채용구분	담당업무	주요담당업무
통계조사관 (공무원근로자)	경상조사 및 연간·특별조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무소 관할지역내 현지 조사업무 수행 -남원사무소: 남원, 순창, 임실, 장수 · 주요업무: 대상처 방문현장조사(조사표 작성),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 조회, 명부 수정보완, 전산처리 등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 상시 수행 등 · 주요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등(통계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조사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

3.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결정사유 유무 정보 확인(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 이중 취업 여부 확인(겸업 불가) → 채용 확정(수습기간: 3개월) → 적격성 심사(수습평가) → 정규 임용

1차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인원(분야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1명	5배수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공무원수행자로서의 소양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

- 면접(2차)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에 따른 채용 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4. 응시 자격요건(판단기준일: 공고일 현재)

□ 필수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 응시연령은 면접일('25. 1. 23.) 기준이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 통계청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채용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가점 및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
 - ※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북한이탈주민 우대 : 1차 전형에 반영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
 - 다자녀 양육자 : 만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장애인 우대 : 1차 전형에 반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 불합격 처리 대상

- 채용서류 미비자, 거짓 작성자(2년간 불합격 처리)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2년간 통계청(소속기관 포함)과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
 - *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질병, 가족간호, 타지역 이사, 통계청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
 - **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교육포함)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심사일정

- 접수기간 : 2025. 01. 02.(목) ~ 2025. 01. 1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naga0163@korea.kr
 - 방문 접수는 평일 09:00 ~ 18:00 내에 접수 (접수시 접수확인 문자메시지 발송)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시 접수확인 문자메시지 발송)
 - E-mail 접수는 마감일 18:00 내에 접수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 **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영되지 않음**
 - 접수장소 : 아래 참조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조사지원과 나선희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1층 통계청 고객지원실	전화: 062-370-6022 naga0163@korea.kr

- 서류심사 : 2025. 1. 20.(월)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1. 20.(월) 오후 18:00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채용정보(합격·공지)에 공고
- 면접심사 일자 및 장소 : 2025. 1. 23.(목) 장소: 남원사무소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세부일정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 23.(목) 18:00 공지 및 합격자 개별 문자 안내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채용정보(합격·공지)에 공고

6.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자필서명 필수(미 서명시 접수 불가)**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첨부1
- ② 응시원서-첨부2
- ③ 자기소개서-첨부3
-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용 동의서-첨부4
- 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첨부5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2024. 10. 3. 이후)
- 자격사항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첨부6)
- 우대사항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첨부6)
- 국가유공자 등(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5~10점)/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 평가기준 상세

- 자격증 점수(5점)

자격증	점수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5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

※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기타 점수(5점)

항목	점수	내용	비고
저소득층	2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
다자녀	2	- 다자녀(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북한이탈주민	2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장애인	3	- 장애인등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5~10점)/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 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5.01.16.(목) 18시' 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최종 합격자는 **호남지방통계청 해당(채용)부서**에서 3개월간 수습을 진행하며, 종료 10일 전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정규채용 여부를 결정함

※ 평가결과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문의사항: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나선희\(062-370-6022\)](tel:062-370-6022)

<첨부1 필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채용구분	성명	서명
남원사무소 공무직근로자(통계조사관)		(서명)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첨부2> 응시원서(필수) - 현 거주지 기재	
2. <첨부3> 자기소개서(필수)	
3. <첨부4>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4. <첨부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필수)	
5. <첨부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해당자에 한함)	
6. 일반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4대보험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7.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우대사항) 기타 증빙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다자녀양육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	

* 제출서류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후 함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시,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태이플러 사용금지)

<첨부2 필수>

통계청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직종 (분야)	공무직근로자 (통계조사관)	지원 부서	남원사무소	응시번호	공란
성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 -		
		주소			
		e-mail			
일반 경력사항 *증명서제출	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내용		
	~				
	~				
* (자기소개서 포함) 기입한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필수(근무 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통계청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내용		
	~				
	~				
* 호남지방통계청(사무소 포함) 경력에 한하여 경력사항에 기입하되, 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자격 사항	구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시행처
	전산				
	기타				
* 자격사항 기입 및 자격증 사본제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					
기타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양육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 해당자 체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주 1. 이중 취업(겸업)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경우 계약 해지 2.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서식과 다르게 불필요한 내용 작성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붙임: 관련 증명서류(저소득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첨부3 필수>

통계청 공무원근로자 자기소개서 (A4 2장 이내 작성)

직 종	공무직근로자 (통계조사관)	지원부서	남원사무소	응시번호	공란
【자기소개】					
- 작성방법) 지원동기, 본인의 장단점, 목표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개인 신상(출신학교, 출생지, 친인척 관계 등)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면 안됨					
【직무수행 역량】					
- 작성방법) 업무경험(경력) 및 직무관련 활동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1. 업무에 필요한 경험, 경력, 또는 관련 지식 등					
2. 통계조사 수행, 문제 해결 능력, 적극적인 자세 등					
3. 공무수행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					
성 명:					(서명)

<첨부4 필수>

(채용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계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이종취업여부 확인,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해당자 자격·경력·학위·저소득·다자녀·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비자종류(외국인)	채용요건(자격·경력·학위 등), 채용우대 확인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자>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채용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 년 월 일

성명: (서명)

호남지방통계청장 귀하

<첨부5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운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혹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익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원자

(서명)

<첨부6 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 통계청
-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
<input type="checkbox"/>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 등·초본(다자녀 양육자)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증명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증명서

*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첨부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_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